

부령 제 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7.28>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병)인 경우: 별표 2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제2조의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

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행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비행사실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 (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표창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1.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3.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8.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9.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에 관련한 의무 위반
10.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 10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2. 성 관련 비행사실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3.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7.28>

제4조 (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

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 (서식)

① 삭제 <2020.7.28>

② 「군인 징계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28>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8.6>

④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19.8.6>

⑤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19.8.6>

⑥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6>

⑦ 영 제22조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8.6, 2020.7.28>

⑧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르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12, 2019.8.6>

⑨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12, 2019.8.6>

⑩ 영 제32조에 따른 항고심사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8.6>

제7조 (징계처분등의 시행세칙)

징계처분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부칙 <제638호,2007.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본문,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0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

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3호,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2018.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

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상참작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88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고심사의결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0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징계등 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을 한 사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9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참작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2·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호 중 "군교도소 또는 영창에서"를 "군교도소에서"로 한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우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 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 태만(라목에 따 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 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근신-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 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지 급받은 경우				
	자.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 의3에 따른 부 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행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 른 부당한 행위 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카.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타. '직무상 비밀' 이나 '미공개정 보' 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2. 복종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 행으로 업무추진 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그 밖의 복종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3. 직무 이탈 금지 의무 위반	가.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근무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무단 이탈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4. 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군사기밀의 누 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6. 청렴 의무 위반		별표 1의2와 같음			
7.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근신	견책
8.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성희 롱, 성매매 및 성폭력 목인· 방조행위	별표 1의3과 같음			
	나. 음주운전	별표 1의4와 같음			
	다. 그 밖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군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3.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4.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 5의2. 제1호타목에서 “ ‘직무상 비밀’ 이나 ‘미공개정보’ 를 이용한 부당행위” 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재물·재산상 이익을 포함한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한 행위와 제3자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실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10호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제10호가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8. 제10호가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 (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유형	금품 등 수수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제공한 경우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비고 1. "금품 등"이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가중사유

-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5)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 6)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미수에 그친 경우
-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3)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 중	기 본	감 경
성폭력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그 밖의 성폭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	감봉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성폭력 목 인·방조 행 위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그 밖의 사람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비고

1. 강간, 강제추행 및 그 밖의 성폭력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지휘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		정직-감봉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제2조제1호나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 가 가볍고 경 과실인 경우
비행의 유형					
1. 성실 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나. 그 밖의 비행사실	강등 ~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휴가단축	근신 ~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 감봉	감봉 ~ 근신	근신 ~ 견책
3. 근무지 이탈금 지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4. 공정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 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 축	근신 ~ 견책
7. 집단행위금지의 무 위반		강등	강등 ~ 군기교 육	군기교육 ~ 휴가단 축	근신 ~ 견책
8. 품 위 유 지 의 무 위 반	가. 성희롱, 성폭력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강등 ~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나. 그 밖 의 비행 사실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 비 고

1. 제8호가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제8호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제2조제2호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금전, 물품, 부동 산, 향응 기타 재 산상이익 수수	금전, 물품, 부동 산, 향응 기타 재 산상이익 수수액 의 4~5배	금전, 물품, 부동 산, 향응 기타 재 산상이익 수수액 의 3~4배	금전, 물품, 부동 산, 향응 기타 재 산상이익 수수액 의 2~3배	금전, 물품, 부동 산, 향응 기타 재 산상이익 수수액 의 1~2배
2. 공금 횡령·배 임·절도·사기 ·유용	공금 횡령·배 임·절도·사기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배 임·절도·사기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배 임·절도·사기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배 임·절도·사기 ·유용액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의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인사법」 제56조의2제1항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서식 1] 삭제 <2020. 7. 28.>

출석통지서

징계등 심의대상자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출석 이유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징계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대/기관명) 징 계 위 원 회

청인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징계등 심의대상자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의견서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의견	
징계등 면제 사유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귀중

열람 · 복사 신청서		
징계등 심의 대상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비행건명		
열람 · 복사 신청범위		
신청인 : 소 속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징계등 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			

「군인 징계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부대/기관명) 징계위원회

청인

적법성심사요청서						
징계대상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비행건명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의결일자						
징계기록목록						
「군인 징계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법성 심사를 요청합니다.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첨 부	징계의결서 및 첨부서류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 1. 비행건명 :
- 2. 비행사실 :
- 3. 처분이유 :

끝.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부 가 금 부 과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직 급) : 군 번 (순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 1. 비행건명 :
- 2.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 3. 징계부가금 부과배수 :
- 4.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 군인사법 제56조의2제3항 및 군인 징계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닐 경우 급여채권,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채납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

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고, 관련된 법원의 판결(물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경우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직 급) : 군 번 (순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 1. 비행건명 :
- 2. 원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
- 3. 감면되어 부과되는 배수 :
- 4. 감면되어 부과되는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 군인사법 제56조의2제3항 및 군인 징계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채납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끝.

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 고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년 월 일자 징계처분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함.

1. 항고이유

2. 요망사항

년 월 일

항고인 주소

(전화번호)

항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대/기관명 기재) 항 고 심 사 위 원 장 귀 하

첨부

- 1.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필수 제출)
- 2. 첨부서류 및 관련자료(임의 제출)

항고심사의결서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의결주문	군인 징계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의결을 기재			
이유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항고 주장 요지, 항고인 및 증인의 출석 여부, 항고인 등의 진술, 증거의 요지, 항고대상사실의 검토 및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의결방법, 의결내용 및 결론			

「군인 징계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부대/기관명) 항고심사위원회

청인